

시민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중심으로¹⁾ -

반 현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교육과 조
-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미 텍사스 대학 오스틴 언론학 박사
- KBS 열린채널 운영위원, 인천일보 시민편집 위원장, 경인방송 iTV 개릴라리포트 운영 위원장 등 역임
- 저서 및 논문: 『온라인 저널리즘 상황에서 의 쌍방향성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오픈라인과 온라인 저널리즘의 현황진단과 전망』, 『가상 공간에서의 공공 저널리즘: 다른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외 다수

1. 들어가는 말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대표적 언론에는 <오마이뉴스>가 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창간 정신으로 기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뉴스나 우리 주변의 소식들을 전달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언론(言路)을 개방한 대안적 인터넷 신문이다. <오마이뉴스>는 일반 시민 기자들이 쓴 기사가 공식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 게재되는 시스템을 마련한 성공적 사례로, 이미 다른 나라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²⁾ 그 이유는 바로 시민 저널리즘 혹은 시민 참여 저널리즘³⁾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⁴⁾ 이런 관심

의 핵심은 바로 시민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이야기나 사회 현상을 다시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기존 매체에서보다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이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기존 매체의 일방적(one-way)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적(interactive 혹은 two-way)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반현, 2000).⁵⁾

그동안 국내에서도 시민 참여 저널리즘 차원의 시

1) 본 글에서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의 한 영역인 ‘시민 참여 저널리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언론사 중심의 시민 저널리즘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취재 및 기사를 생산하고 기존 미디어의 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이 쓴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오마이뉴스>의 성공 사례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신문총회(WAN)와 온라인발행인협회 런던포럼 등에서 소개돼 세계 언론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3) 시민 저널리즘과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하겠다.

4) <오마이뉴스>는 2004년 <시사저널>이 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국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6위에 올랐으며 2002년부터 3년 연속 6위를 차지했다.

5) 반현(2000). 가상 공간에서의 공공 저널리즘: 다른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5호, 2000-1, p. 59-74.

저널리즘의 위기가 가속화되던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언론인들에 의해
시민 저널리즘 등장

도가 기존 언론과 온라인 언론에서 몇 차례 존재해 왔으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 왔다. 반면 일반 시민기자들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그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촛불시위 자작극'의 경우가 시민기자에 의한 윤리적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⁶⁾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초기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법적, 윤리적 논란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방안들이 있을 것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등장과 역할 :
시민 저널리즘 관점에서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관한 논의 이전에 우선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으며, 구분을 하더라도 두 개념이 결국 비슷한 문제의식과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 저널리즘은 저널리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언론인들에 의해 등장했다. 신문 독자의 이탈은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 뉴스

의 시청자 이탈도 늘어나는 추세다. 저널리즘의 위기는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도구이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공공 영역의 축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을 하버마스식으로 정의하자면, 한 시스템이 한 시대를 지탱해 오던 정체성(identity)을 상실하고 다음 시대에 활용할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바로 아노미 즉 혼란의 상황인 것이다.⁷⁾

이런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널리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부터 “시민들과 정부의 심리적 괴리감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시민들의 전반적인 불신임 그리고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소외감”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이 출발했다(Glasser and Craft, 1997: 5). 듀이(Dewey, 1927)의 정의⁸⁾를 빌려 시민 저널리즘의 목적을 정의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시민 저널리즘은 단순히 뉴스의 전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통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해결 방법도 서로의 대화와 적극적 참여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이야말로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 저널리즘은 미국 언론사들이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임을 좁혀 보려는 노력으

6) 추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겠다.

7) 지금 우리의 언론을 봐도, 심각한 보수 진보 논쟁, 기형적인 산업 구조, 독자들로부터의 신뢰 하락 등 안팎으로 복합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8) 듀이(Dewey, 1927)는 ‘공중(public)’을 “공통된 문제점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들의 해결책까지도 서로 찾아가는 개인들의 정치적 성격의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로 시작되었다. 펠로우스(Fallows, 1996)는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의 주원인으로 미국 언론들의 지나친 자만심(arrogant), 부정적 시각(cynical), 스캔들 위주의 선정주의(scandal-oriented sensationalism) 등을 지적했다. 시민 저널리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미 뉴욕 대학의 제이 로젠(Jay Rosen) 교수는 “저널리스트들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중요시 여긴 몇몇 핵심 사항들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 시민 생활이나 민주주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면 그 역시 과감히 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Tharp, 1996: 74). 또한, 알츨(Altschull, 1996)은 시민 저널리즘의 탄생은 과거 권위의 상징이었던 저널리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의 결실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했다. 즉, 하버마스가 말했던 “공공의 장(public sphere)”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Rheingold, 1993: 5).

시민 저널리즘이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공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마이어(Meyer, 1997)는 시민 저널리즘은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물론 마이어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채리티(Charity, 1995) 역시 시민 저널리즘의 주요 탄생 배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으려 했다.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 및 실천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첫째로 취재원의 다양성이다. 시민 저널리즘의 전제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가 혹은 엘리트만이 아닌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일상적인 뉴스 보도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슈 관련 심층 정보(thematic information)의 제공이다. 시민 저널리즘을 위한 실천 방법 중에 하나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특정 이슈 혹은 문제에 깔려있는 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정보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해 대안 확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시민 참여 정보(mobilizing information)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은 정보 전달 중심에서 독자들과의 대화 중심 저널리즘으로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것은 좀 더 많은 독자들과 광고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상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Shepard, 1994: 30). NBC News의 사장인 마이클 가트너 역시 시민 저널리즘을 비판하면서 심지어는 시민 저널리즘을 적대시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시민 저널리즘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자부심이었던 객관성(objectivity)을 상쇄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널리스트들은 객관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때때로는 시민들을 깨우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경우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뉴욕커(New Yorker) 잡지의 데이비드 렘닉(Remnick, 1996: 41-42)은 “왜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리한 정보력과 비판력을 단순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버리려 하는가? 저널리스트들이 마치 시민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널리즘은
지속적으로 시도됐으며
여러 성공사례 창출해

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웨이터처럼 행동한다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처럼 전통적 저널리스트들은 객관적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은 뉴스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한편 자칫 저널리스트들을 그들이 보도하는 사건이나 이슈의 활동가들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Glasser and Craft,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널리즘은 언론의 전반적 위기의식과 위기상황을 타개할 다른 대안의 부재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지역 언론 중심의 미국 신문시장 구조 속에서 성공적인 사례들도 나타났다.

1)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 사례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의 일간지 1500여 개 가운데 약 1/5 가량이 시민 저널리즘에 기반을 둔 기사를 실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⁹⁾ 미국에서의 시민 저널리즘의 확산에 있어 퓨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한 석유기업 상속인의 거액 기부로 1993년 설립된 퓨 센터는 지난 10년간 1300만 달러를 들여 120여 개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그 예로 〈Wisconsin State Journal〉의 선거 캠페인 “우리가 유권자다”(1994년), 〈Sabana Morning News〉의 “노인문제”(2000년), 〈New Hampshire Public Radio〉의 독자들의 세금계산을 도와주는 “세금에의 도전”(2000년) 등과 같은 성공적인 기획기사들이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2003년 5월 퓨 센터가 문을 닫자 미국 언론들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기존 저널리즘의 취재방식과 시민 저널리즘의 취재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퓨 센터의 전 소장이었던 잔 새퍼는 그 이유를 “전통적인 기사 작성은 취재방향을 미리 선정한 뒤 시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적당한 내용만을 뽑아 기사에 반영한다. 그러나 시민 저널리즘에서는 먼저 시민들과의 다양한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사 방향을 잡는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나 FGI(소집단 심층면접) 등의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저널리즘의 취재방식은 시민들을 기사 작성에 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기존 취재 방식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단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널리즘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New York Times〉가 2003년 8월 음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독자들의 의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노력이다. 〈Washington Post〉 역시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미 대선 후보였던 존 케리의 러닝메이트로 누가 적합한가를 물었다. 그 방식은 후보자 이름을 단순히 제시한 것이 아니라 러닝메이트의 조건으로 “행정부 경험”, “외교정책 경험” 등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5개를 고르라고 한 뒤 거기에 맞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찾게 했다. 〈Washington Post〉의 사례는 시민들이 어떤 경로로 특정 정치인을 선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시민 저널리즘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2003년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의 언론대

9) 한겨레. 2004년 5월 19일자.

학원에서 실시한 “전국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미국 언론인들의 72%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시민 저널리즘의 주장에 찬성했다. 이는 시민 저널리즘이 이미 미국 언론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증거이며, ‘시민 저널리즘이 위기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시민 저널리즘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미국에서는 시민 저널리즘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매체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 운동의 방향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2) 인터넷의 등장과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

인터넷이 이미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산업사회 이후 현실 사회에서 만들기 어려웠던 ‘공동체를 형성’ (community building) 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PC 통신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비슷한 사고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호회를 조직하고 그 속에서 표출되는 여론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바로 이런 공동체 형성의 특징은 온라인 저널리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시민 저널리즘으로의 가능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MIT 미디어 랩 소장이었던 니그로폰테 역시 컴퓨터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 전달을 넘어 공동체 건설이라는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보의 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는 도서관을 대체하는 기능을 뛰어넘어 새롭고 전 세계적인 가상공간에 또 하나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다(Negroponete, 1995).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라인 저널리즘이 시민 저널리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우선 온라인

신문은 레인골드가 말했던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ies)”, 즉 여러 사람들이 가상공간에 모여 자신들 주위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토의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온라인 뉴스는 기존 뉴스 매체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예를 들면, 뉴스별 토론방, 채팅방, 편집자나 기자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독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이고 쉽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필요하다면 실제로 만나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도출해내고, 여론을 형성하여 지역 매체나 입법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전국 편집자 협회(National Conference of Editorial Writers, NCEW, 1996)는 공식적으로 “온라인 신문의 커다란 장점은 바로 독자들의 요구에 빠르고 쉽게 반응할 수 있고, 그들이 쌍방향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미디어가 시민 저널리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바로 객관성(objectivity)이다. 시민 저널리즘에서 제안하는 것들 중 하나는, 기자들은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의 편집 방향이 정착된다면 인터넷에서의 기사들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서의 기사들 보다 객관성에서 약간은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Los Angeles Times>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쇼(Shaw, 1997)는 인터넷의 기사들은 전반적으로 좀 더 “주관적 태도(Attitude)”를 가진다고 그의 칼럼에서 말했다. 단, 현재의 초기 온라인 저널리즘 상황 하에서는 기사의 성격이나 기자들의 태도가 전통적 저널리즘에서처럼 객관성에 치중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릿(Meritt, 1995)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기술적인 특징들만이 시민 저널리즘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사이버 공간을 소수 엘리트들의

인터넷의 등장으로 매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 방향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

소유물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하려는 저널리스트들의 의지와 의식 구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기존 뉴스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것으로는 이런 시민들과의 연계를 가질 수 없고 새로운 내용이나 좀 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뉴스를 제공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론인 '시민 저널리즘'을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내 학자들이나 언론인들도 많은 고민을 해왔다. 비록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며 그 용어도 미국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노력들은 계속 있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매체는 인터넷으로 <오마이뉴스>가 그 모델을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경우 미국식 시민 저널리즘 모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여기에 '시민 참여 저널리즘' 개념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3) 시민 참여 저널리즘 개념과 시민기자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시민 저널리즘'과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어떻게 구별해야할까? 혹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김병철·최영(2005)의 분류에 따르면 넓은 개념으로 시민 저널리즘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¹⁰⁾ 우선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의 경우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는 점에서 전통적 저널리즘과 다르지만 여전히 언론사와 기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사를 선별하고 편집한다는 점에서 가장 소극적 형태의 시민 저널리즘이다. 기존 미국 지역 언론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들이 주로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유형은 "시민·기자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으로 시민기자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기사를 쓰고 저널리즘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사의 편집권은 언론사 전문 편집 기자들이 가지고 있어 완전한 의미의 시민 참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마이뉴스>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은 전문 기자가 없는 순수하게 시민들에 의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전문 기자들의 어떤 간섭도 배제된 시민들만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이 가능한 형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것처럼, 두 개념을 굳이 구별을 하자면 시민 저널리즘이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을 저널리즘 과정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취재 및 기사를 생산하고 기존 미디어의 공식적 채널을 통해 자신이 쓴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시민 저널리즘으로 보면, 앞의 세 가지 모델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두 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종의 "퍼블릭 액세스 저널리즘(public access in journalism)"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 김병철·최영(2005).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학보』 통권 26호 1-23쪽.

퍼블릭 액세스는 주로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들을 지상파나 케이블, 혹은 위성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KBS)의 <열린채널>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일반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도 상업적 목적이나 타인의 인격권 침해 등 법적,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상물을 걸러내는 나름대로의 장치인 선정 기준과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액세스 저널리즘'은 단순히 시민 혹은 수용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뉴스 생산자 혹은 뉴스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보는 개념인 것이다. 여기서 바로 시민 기자제도 개념이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시민 기자제도는 시민 중심의 이슈 발굴을 위한 일종의 시민 생활권 비트 시스템으로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만드는 시민 저널리즘 취재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이종수, 2002).¹¹⁾ 이는 미국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언론사 위주의 프로젝트 방식과는 다른,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편의상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란 용어로 한정하여 쓰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주인공인 '시민기자'는 누구인가?¹²⁾ <오마이뉴스>의 예를 들면 시민 기자는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뉴스의 70-80% 이상을 생산해내는 언론사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존 주류 언론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뉴스 전달에 불만족한 시민들은 그들만의 시각으로 사회적 사안이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기사화하고 욕구를 분출하고 있다. 이런 시민 기자들의 응집력과 차별화된 기사는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급성장했다.

그러나 시민기자 자신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와 같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거나 혹은 반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촛불시위 자작극' 사건을 계기로 시민기자의 존재가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자의로 혹은 타의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시민기자의 실체가 명확히 공유되지 못하는 데도 한 원인이 있다.

현실적으로 시민기자의 양적 팽창은 그들이 생산하는 기사량의 폭증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약 2만 4천여 명의 시민 기자가 등록되어 있는 <오마이뉴스>의 경우 하루 170-180여 개의 기사가, 기존 언론 가운데는 한겨레의 <하리리포터> 등록 시민기자가 하루 50-60여 개의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고 한다.¹³⁾ 앞에서 예를 든 '앙마'라는 시민기자의 '촛불시위 자작극' 논란은 결국 양적으로 성장한 시민기자단과 그들이 생산하는 기사가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시민기자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만은 없다고 보인다. 인터넷 언론들이 좀 더 체계적인 편집기준과 검증단계를 준비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율규제 외에도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시민기자들은 정식으로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전문기자와 구별되며 이런

11) 이종수(2002). 선거이슈와 이슈보도: 시민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관훈저널』 통권 제84호.

12) 「시민기자가 누구냐구?」 <오마이뉴스> 2003년 2월 7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 &office_id=047&article_id=0000023790>

13) 「시민기자와 편집자는 동지입니다.」 <오마이뉴스> 2003년 1월 24일.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104273>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취재 및 기사를 생산하고 이를 매체 통해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식

측면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기자가 쓴 기사가 타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했을 경우 그 기사를 실은 언론사는 책임을 져야할지 혹은 면책받을 수 있을지, 만약 져야 한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신문법 및 그 시행령’과 ‘언론중재법’ 상에 ‘인터넷 신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정기준¹⁴⁾을 충족하는 언론사와 직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시민기자에 관한 조항은 아니다. 비록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 패러다임이 이제 정착하는 단계고 관련 법적, 윤리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추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기존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타 제도적 장치 및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 및 원인

시민 참여 저널리즘과 관련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시민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는 누가, 어떤 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 상근 기자의 경우 언론사 직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사 차원의 다양한 징계수단이 존재한다.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책임도 비교적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 반면 시민기자의 경우 해당 언론사의 정식 직원처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아직 관련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겠다. 다음은 지난 2005년에 언론중재위원회로 들어왔던 사례다.¹⁵⁾

과거 어느 정당의 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당시 북부지방경찰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K라는 사람은, 자신이 “일진회 아이들을 사형이라도 시키고 싶다”,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다”, “부동산 경매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 보도한 한 시민기자와 해당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바이러스>, <시민의 신문>, <브레이크 뉴스>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과연 해당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시민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만약 져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피해자인 K씨가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 발행 요건으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15) 필자의 요청으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관련 사례들을 참고로 살펴보았다.

을 청구했고 결국 심리 과정에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해 해당 인터넷 언론들이 기사를 썼던 시민기자의 자격을 정지하고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시민기자가 쓴 기사라도 해당 인터넷 언론사가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기사에 우선해서 특정 기사를 자신의 사이트에 실었다면 시민 기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분명한 책임 소재 기준이 세워져야 함도 물론이다(김서중, 2006).¹⁶⁾¹⁷⁾

또 다른 법적 분쟁 사례는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 관련 문제다. 2005년 9월 21일 '극단 그리고'에 저작권 위반을 통보하는 한 통의 이메일이 전달됐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전(前)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자신의 기사를 극단 측이 홈페이지에 무단 전재했으므로 80만 원을 자신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극단은 무단 전재된 기사를 발견했을 경우 영리활동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먼저 연락을 한 후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언론사인 <오마이뉴스>는 당시 그 기사는 제명된 상태라 회사가 간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당사자인 극단과 기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 사례 역시 시민기자의 모호한 신분으로 인한 법적 책임 소재 문제와 시민기자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만약 위의 시민기자가 <오마이뉴스>의 정식기자였더라면 어떠했을까? 위와 같이 기자 개인이 직접 극단에 연락하기 보다는 언론사

차원에서 극단 측에 무단 전재된 기사를 삭제하라는 사전 통고가 먼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기자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은 결국 기자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애매한 상황 때문이며 따라서 그로 인한 법적 책임성도 모호한 것이다.

법적 문제 외에도 시민기자의 윤리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촛불시위 자작극' 사건은, 2002년 미군 궤도 차량에 치어 숨진 여중생을 위해 촛불 시위를 처음 제안한 '앙마'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기자의 사례다. 2002년 11월 27일 '앙마'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모 씨는 <인터넷 한겨레> 게시판 등에 촛불시위를 제안한 뒤, 별 다른 반응이 없자 이틀 뒤인 29일 <오마이뉴스>에 '뉴스게릴라(시민기자)' 자격으로 마치 제3자가 제안한 것처럼 촛불시위 제안 기사를 써서 올렸다. 하지만 곧 '촛불시위 자작극' 논란이 벌어졌고 한나라당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기사가 실릴 당시만 해도 '앙마'가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무지하고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시민기자 '앙마'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해명하며 <오마이뉴스> 측에 사과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시민기자가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잘못 이용한 경우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기자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기자와 관련된 또 다른 윤리 논란 사례는 특정업체의 홍보직원이 시민기자로 등록한 후 자사의 보도자료를 기사로 올린 경우다. <문화일보>는 이를 두고 기사를 가장한 홍보며 이를 <오마이뉴스>가 방

16) 김서중(2006). 「인터넷 신문의 피해구제 보도 방법」. 언론중재위원회 워크숍 발제논문.

17) 참고로 위의 사례의 경우 즉, 시민기자가 쓴 기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는 해당 언론사가 검증과정을 거쳐 해당 기사를 선택하고 게재했기 때문에 언론사도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즉, 좀 더 구체적인 제언을 하자면 기존 관례를 참고로 반론보도 혹은 정정보도의 경우 언론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며, 시민기자의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언론사의 '기자' 직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영구 제명시키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 만약 민사적 손해배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새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반영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과 중재가 가능하다고 본다.

시민기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및 보호 장치
 전무, 시민기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치했다고 기사화해 논란이 됐다. 2003년 4월 2일자 <오마이뉴스> 경제부분에 ‘자녀 희망직업, 최첨단 직종이 의사, 법관 제쳐’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기자가 한 채용정보업체 홍보직원이라는 것을 두고 <문화일보>는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당사자 시민기자는 반론기사를 내보냈고 <오마이뉴스>도 해당 언론사로써 자사의 공식 입장도 함께 밝혔다. 즉, 해당 시민기자와 <오마이뉴스> 측은 시민기자제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개방형 기자시스템’으로 비록 “홍보직원이 기사를 쓰더라도 기사 내용이 회사의 홍보라기보다는 공익이나 정보성에 합치된다고 판단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론했다.

기존 언론사에도 수많은 홍보성 보도자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뉴스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일부 기사화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시민기자제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 언론보다 개방적인 편집시스템을 가진 인터넷 언론의 경우 기존 언론사보다 ‘상업적 이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제도적 보완 :
 시민기자제를 중심으로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 동안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은 역설적으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영향력과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몇몇 사람들의 극단적 평가에 의해 ‘위기

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시민 기자가 쓴 기사가 타인의 인권침해나 일방적 주장, 즉 명예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기존 전문 기자들보다 그 확률은 더 높다. 하지만 분명 상근기자가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 경우와는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존 주류 언론의 봉어빵식 뉴스의제와 논조에서 탈피해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시민의 시각에서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사 자체가 개인화되고 개인적 글쓰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개인화 자체만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시민기자들의 바로 이러한 시각과 글쓰기가 하나의 대안 언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시민기자의 기사가 주관적 견해로만 치우칠 우려가 항상 존재하며 이는 분명 상근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언론사 차원의 조직적 사실 확인(fact-checking) 절차나 법률적 조언과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즉,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과거 소송 당했던 경우를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런 언론 관련 소송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속 고문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자신이 쓴 기사가 법적 문제가 될지에 대해 미리 조언을 얻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게이트키퍼를 한다.

실사 법적인 소송이 뒤따른다 해도 그동안 언론사들은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언론사가 그 손해 비용을 감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사무감독자 책임’으로 전환해 기자 개인에게도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물론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기자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 책임’ 원칙의 경우 개인적 부담이 없어 같은 실수

를 반복할 수 있지만 기자가 언론의 자유라는 틀 속에서 자유롭게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기자 개인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위축효과'가 발생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없다. 반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기사나 무책임한 기사 대신 신중하게 기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경우 시민기자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사례들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제도적 방안들이 필요한가?

우선 법적인 경우 작년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을 통해 피해자는 신문, 방송, 잡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⁸⁾ 그러나 이런 경우도 해당 인터넷신문에 근무하는 상근 기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시민기자에 대한 조항은 아니다. 여기서 바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앞서 제시된 시민기자의 허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의 경우 피해자와 해당 언론사 간의 협의로 정정보도를 내고 해당 시민기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비슷한 사례나 혹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추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시민기자가 쓴 기사의 법적 보호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추후 유사한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언론사나 시민기자에게 모두 적절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를 제도적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즉, 피해자는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간단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피해 당사자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언론중재는 조정이 성립한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언론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시간에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그러나 언론중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사나 피해자 모두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장기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양측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게 된다.

기존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중재위원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중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론보도 혹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중재가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추후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문을 작성할 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명문을 포함시켜 두어 추가적인 분쟁을 최소화해야 했다. 하지만 새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할 수 있게 되어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된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서 언론중재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언론 관련 행위들이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이른바 COI(Content Object

18)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은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규정을 중용해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인터넷 신문만을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의 각주 10)을 참조)

언론중재법 개정 및 언론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기자의 오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 필요

Identifier) 서비스가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는 불법다운로드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개별 콘텐츠에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COI 총괄관리 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경우 한국언론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COI가 적용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료의 징수와 정산, 분배를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신뢰성 있는 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I는 언론재단과 40개 언론사 그리고 네이버가 추진 중인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Aqua Archive Project)과 맞물려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적 장치들은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큰 문제 중 하나인 기사의 신뢰성과 기사의 저작권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기자의 교육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기존 기자들의 경우 처음 입사하면 수습기간 동안 여러 부서를 돌며 선배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을 받는다. 이런 직접 체험 교육 외에도 전문 기자에 대한 재교육은 언론재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시민기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권리나 책임에 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시민기자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취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시민기자들도 스스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질 높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말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해 기존 언론인들에 의해 좀 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저널리즘 과정에 참여시켜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시민 저널리즘’의 적극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개념 간에는 그 의미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시민 참여 정도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시민 저널리즘을 폭넓게 정의하는 학자들은 시민 참여 저널리즘도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고 말한다.¹⁹⁾ 이처럼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국내·외 학자나 언론인들에 의한 많은 논의는 그만큼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적, 윤리적 문제로 인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위기라는 말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 시대상 위기보다는 변화의 시점에 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기존 언론사의 법적, 윤리적 검증 시스템도 완벽한 것은 아니며 종종 대형 오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의 통제 장치를 두고 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비해 시민기자제도의 경우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사 쓰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걸러낼 만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전적으로 시민기자의 양심과 윤리성을 믿고 기사를 게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19) Aday, H.(1999). Public journalism and the power of the press: exploring the frame setting effect of the new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김병철·최영(2005), 앞의 논문.

장점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시민기자의 기사로 인해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된 자율적 규제 장치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융통성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또 생각해야 할 문제는 비록 시민기자들이 아무리 자율적으로 기사를 쓰는 일반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처럼 성공적인 한국적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비록 시민기자들이 열악한 인터넷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내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당 언론사들의 경우 신문법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나 언론인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기자들의 교육도 함께 고려하고, 외부 지원의 경우는 신문발전기금 중 일부를 시민기자들을 위한 원고료나 기자 교육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KBS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열린채널>의 경우 20분 영상물 한 편당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 하는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동시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시민기자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최근 <오마이뉴스>의 편집국 개편 사례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난 4월 오마이뉴스는 '제2창간'에 버금가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²⁰⁾ 개편안은 상근기자와 시민기자로 이원화된 체제를 '뉴스 게릴라본부'라는 이름아래 일원화시킴으로써 상근기자의 역할을 기존 독자적 취재와 기사 작성에서 시민기자들의 서포터스 역할로 전환시킨 것으로 한층 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라는 창간정신

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실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언론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시도하는 다른 언론사들 역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위기라기보다는 변화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검증시스템 등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관련 협회, 예를 들면 '인터넷뉴스미디어협회'와 같은 기구에서 기존의 윤리강령 등을 재정비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 심의와 규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다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현대 사회의 공적 영역 확대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기존 저널리즘의 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철·최영(2005).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학보』 통권 26호 1-23쪽.
- 김서중(2006). 「인터넷 신문의 피해구제 보도 방법」. 언론중재위원회 워크숍 발제논문.
- 반현(2000). 가상공간에서의 공공 저널리즘: 다른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5호, 2000-1, 59-74쪽.
- 이종수(2002). 선거이슈와 이슈보도: 시민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관훈저널』 통권 84호.
- 시민기자가 누구냐? <오마이뉴스> 2003년 2월 7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23790>
- 시민기자와 편집자는 동지입니다. <오마이뉴스> 2003년 1

20) 미디어오늘. 2006년 4월 20일자.

- 월 24일<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104273>
- Aday, H.(1999). Public journalism and the power of the press: exploring the frame setting effect of the new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ltschull, H. J.(1996). "A crisis of conscience: Is community journalism the Answer?"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1, pp. 166-172.
- Cappella, J. N., & Jamieson, K. H. (1997).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ity, A. (1995). *Doing public journalism*. New York: Guilford.
- Dewey, J. (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New York: Holt Rinehart.
- Fallows, James M. (1996). *Breaking the news : How the media undermine American democracy*. New York : Pantheon Books.
- Glasser, T. L. & M. Craft (1997, July). "Public journalism and the search for democratic ideals, "A paper presented to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nnual convention, Chicago, Illinois.
- Merritt, D. (1995).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life: Why telling the news is not enoug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yer, Philip. (1997). "Doing well by doing good." Available:<http://groucho.admin.unc.edu/endeavors/aut97/dial2.html>.
- National Conference of Editorial Writers. (1996, Oct. 18). "Public journalism." In NCEW Online [On-line]. Available: <http://www.ncew.org/civic.html>.
- Negroponte, N. (1995). *Being digital*. New York:
- Norris, P. (2004). *The evolution of election campaigns: Eroding political engagement?* Paper for the conference on Political Communications in the 21th Century, St Margaret's College,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January 2004.
- Patterson, T. E. (1993). *Out of order*. New York: Knopf.
- Remnick, D. (1996, Jan. 29). "Scoop," *The New Yorker*, pp. 38-42.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ss.: Addison-Wesley.
- Rosen, J. (1995, May-June). *Public journalism: A case for public scholarship*, *Change* 27, no. 3, pp. 34-39.
- Shaw, D. (1997, June 19). *The long and short of it: Internet allows great detail, but will people read lengthy stories online?* *Los Angeles Times*, A21.
- Shepard, J. (1994, May). *The gospel of public journalism*. *American Journalism Review*. pp. 28-34.
- Swanson, D. L. & Mancini, P. (1996). *Politics, Media and Modern Democracy: an International Study of Innovations in Electoral Campaigning and Their Consequences*. Westport, Conn.: Praeger.
- Tarp, M. (1996, March 18). "The media's new fix", *U.S. News & World Report*, pp. 72-73.